

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6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5월 3일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, 용어의 정확한 사용과 입법기술적으로 규정의 위치를 조정하고, 불필요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조문 순서는 시장의 책무가 먼저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조문의 위치를 조정함(안 제3조와 안 제4조).
- 안 제6조제2항 중 제3호 “피고발인으로부터 보복 피해를 우려하는 고발인”은 제2호 “범죄피해 우려자”의 한 범위 내에 있어 제3호를 삭제함(안 제6조제2항제3호).
-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보호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나, 인정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느냐, 이를 삭제함(부칙 안 제2조).

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나목 중 “생활양식이”를 “생활환경이”로 한다.

안 제3조를 제4조로 하며, 안 제4조를 제3조로 한다.

안 제6조제2항제3호는 삭제하고,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안 부칙 제1조, 제2조를 삭제하고,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

〈 수정 조문대비표 〉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범죄피해자”란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. 2. “범죄피해 우려자”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 3. “사회안전약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 나. <u>생활양식이</u>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. 언어적·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라. 그 밖에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. “안심물품”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. <p><u>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제정안과 같음)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나. <u>생활환경이</u>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다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라. (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(제정안과 같음) <p><u>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서울특별시(이하</p>	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안심물품 지원사업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“시”라 한다)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)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,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범죄피해자 2. 범죄피해 우려자 3. <u>피고발인으로부터 보복 피해를 우려하는 고발인</u> 4. 사회안전약자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,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안심물품도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<u>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6조(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< 삭 제 ></u></p> <p>3. -----</p> 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< 삭 제 ></u></p>

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,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피해자”란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.
2. “범죄피해 우려자”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사회안전약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
 - 나.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
 - 다. 언어적·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
 - 라. 그 밖에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4. “안심물품”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사업계획의 수립)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 지원 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, 추진 방향
2.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
3.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
4.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
5.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)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,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
1. 범죄피해자
2. 범죄피해 우려자
3. 사회안전약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,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관계 구축)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, 서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육청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·협력 등의 업무협약을

체결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준수)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